

운영규정의 개요

■ 입소 정원 및 모집방법등에 관한 사항

제1조(입소정원)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28명으로 한다.

제2조(모집방법) 시설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입소 어르신 가족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한다.

제 3조(입소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1 ~ 4등급 판정을 받은 자

제4조(절차 안내) 입소상담 -> 입소계약 -> 입소완료

제5조(필요서류 지참물) 어르신 보유 질병 소견서 및 진단서, 처방전, 가족관계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입소자 주민등록증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입소계약기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상호간에 자율로 정한다.

제7조(계약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와 기관 상호간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수급자에게 최상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 절차이다.

제8조(월이용료기타비용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매해 수가 변동으로 인한 별첨

② 월 이용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며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③ 시설 비급여 비용(식재료 및 의료비)

- 식사 1식 2,500원 간식 1회 800원 1일 8,300원(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재료비 변경시 서면으로 고지하며 입소계약서에 적용한다.)

④ 비용수납방법의 경우 카드결제 혹은 금융기관이체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 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입소자 또는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변경 되었을 경우
 - 2)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3)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4)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 할때

■ 입소계약의 해제 및 종료

제10조(시설의 계약해제) ① 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 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 1)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지체했을 경우
- 3)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제11조(입소자의 계약해제)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제가 되는 것으로 한다.

- 1) 입소자는 계약해제와 동시에 생활실을 비워 주어야 한다.
- 2) 입소자가 계약해제를 시설에 알리지 않고 생활실을 퇴소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시설이 퇴소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계약의 종료)

- ①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② 시설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여 계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③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14조(급여비용 변경절차)

-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일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5조(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 하루 3회 식사 제공/ 주 1회 이상 목욕 제공/ 매일 배변 관리 및 구강청결등 위생관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 상시적으로 기능회복훈련 제공/ 주 1회 인지, 여가프로그램제공/ 가족참여프로그램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 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

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3)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16조(특별한 보호 제공 기준) -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감염으로 인한 격리등

- 기본 4인실 사용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수납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17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 ④ 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 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18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제19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2025년도 등급별 본인부담금 안내

■시설급여(1일)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01호(2025. 1. 1.)에 따름

구분	1등급(1일)	2등급(1일)	3~5등급(1일)
노인요양시설(개정법)	90,450	83,910	79,240

2월 / 28일 기준							
구분	일반(20%)		의료급여, 감경(12%)		의료급여, 감경(8%)		식재료비 +간식비
	시설료	식비포함 (간식) 총액	시설료	식비포함 (간식) 총액	시설료	식비포함 (간식) 총액	
1등급	506,520	738,920	303,912	536,312	202,608	435,008	232,400
2등급	469,896	702,296	281,938	514,338	187,958	420,358	
3등급	443,744	676,144	266,246	498,646	177,498	409,898	
4월, 6월, 9월, 11월 / 30일 기준							
구분	일반(20%)		의료급여, 감경(12%)		의료급여, 감경(8%)		식재료비 +간식비
	시설료	식비포함 (간식) 총액	시설료	식비포함 (간식) 총액	시설료	식비포함 (간식) 총액	
1등급	542,700	791,700	325,620	574,620	217,080	466,080	249,000
2등급	503,460	752,460	302,076	551,076	201,384	450,384	
3등급	475,440	724,440	285,264	534,264	190,176	439,176	
1월, 3월, 5월, 7월, 8월, 10월, 12월 / 31일 기준							
구분	일반(20%)		의료급여, 감경(12%)		의료급여, 감경(8%)		식재료비 +간식비
	시설료	식비포함 (간식) 총액	시설료	식비포함 (간식) 총액	시설료	식비포함 (간식) 총액	
1등급	560,790	818,090	336,474	593,774	224,316	481,616	257,300
2등급	520,242	777,542	314,145	571,445	208,097	465,397	
3등급	491,288	748,588	294,773	552,073	196,515	453,815	

(1일 8,300 = 1식 2,500원 * 3식 = 7,500원 + 간식비 1회 800원)

상기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행복나래요양원